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66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25인
2. 제 안 일 : 2025. 6. 5.
3. 회 부 일 : 2025. 6.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Ⅲ. 검토의견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구체화(안 제382조의3)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② 이사가 직무수행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382조의3).

현 행	개 정 안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현행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함과 더불어 이사

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액·다수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규정 마련을 통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나. 검토의견

(1) 이사의 충실의무

□ 현행 제382조의2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의미함.

○ 판례는 충실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사가 과도한 보수지급기준 마련에 개입하거나¹⁾ 또는 부당한 채무면제 약정 체결²⁾ 등으로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이사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회사이며,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은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퇴직을 앞둔 이사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사안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그 배임행위의 결과인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

2)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은 대표이사가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 제1심에서 승소하고도 그 항소심판결 선고 직전에 회사에 아무런 이득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와 그 반환채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 상대방은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의 피고이자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행위에 가담한 지위에 있으므로 신의칙상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현행 법문에 따르면 주주·채권자 등이 포함되지는 아니함.

- 다만, 회사이익과 주주이익이 원칙적으로 일치한다고 보는 관점에
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증진할 의
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음.³⁾

□ 이와 같은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의 행위는 제399조제1항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제
401조제1항에 따른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음.⁴⁾

□ 한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주요국의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입법례 현황
미국·영국	○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신인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향⁵⁾⁶⁾ -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⁷⁾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personal liability)의 대상(상대방)에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병기⁸⁾ - (미국 모범회사법) 이사의 공정하게 대할 의무의 상대방 및 동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의 상대방에 대해서 회사와 주주를 병렬적으로 규정
일본·독일	○ 명시적 규정은 없고,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견해 존재 ⁹⁾

3)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 2024. pp. 426-427

4)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개별적 검토

□ 먼저, 이사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주주를 포함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안 제382조의3제1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¹⁰⁾ 우리나라의 주주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됨.

○ 다만, 이사가 부담하는 선관의무·충실의무는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과¹¹⁾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

5) 금융감독원,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 2025. 3. 19.자 보도자료

6) 다만,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2025. 1. 15.)로 열린 상법 공청회 중 2인의 진술인(진술인 송옥렬·명한석)은 미국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2인의 진술인(진술인 최준선·정우용)은 그렇지 않다고 봄.

7)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

번역본(출처 : 법제처 세계법령센터)

제102조(정관의 내용) (b) 이 조 제(a)항의 의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이외에 정관은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7)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에 관하여 이사의 개인적인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i) 회사나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의 위반의 경우 (이하 생략)

원문본

§ 102 Contents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 In addition to the matters required to be set forth in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may also contain any or all of the following matters:

---(7) A provision eliminating or limiting the personal liability of a director or officer to the corporation or its stockholders for monetary damages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as a director or officer, provided that such provision shall not eliminate or limit the liability of:

-(i) A director or officer for any breach of the director's or officer's duty of loyalty to the corporation or its stockholders;(이하 생략)

8) 금융감독원은 위 자료에서, “이는 충실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음.

9) 위 상법 공청회 중 진술인 명한석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진술인 최준선·정우용의 경우 독일·일본·프랑스가 이사가 회사 재산을 편취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고 언급함.

10) 한국은행,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2025. 3. 17.에 따르면, G20 중 16개국의 주주보호 수준 분석 결과 한국은 12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됨.

11)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¹²⁾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은, 종래 회사법·형법(배임죄) 법리에 비추어 다소 이질적인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이사가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내용으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개정사항(안 제382조의3제2항)에 대해서는, 개정에 따라 새롭게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함.

○ 다만, 개정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 중 “총주주”의 경우 현행 제287조의43, 제604조¹³⁾ 등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예외적인 의결정족수 규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주주명부

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2)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이사가 주주들과의 관계에서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13) 「상법」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기재된 모든 주주를 의미하나, “전체주주”의 경우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이 심사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¹⁴⁾

(3) 관계기관 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상법상 ‘주주’라는 용어는 통상 ‘개별 주주’를 의미하므로, 의무 상대방으로 회사와 주주를 병렬적으로 설정한 규정(안 제382조의3제1항)은 개별 주주에 대한 직무 창설로 해석되어 개별 주주에 대한 배임죄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¹⁵⁾ 법체제적인 관점에서도 현행 민사법상 법인격 제도와 배치되므로 신중할

14) 다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4.) 중 관련 개정안(의안번호 제2205704호, 2024. 11. 19. 제출) 대표발의의원(이정문의원)의 해당 용어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제2항 전단, 총주주의 의미는 이 상법상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총주주란 개별 주주들의 선호를 하나하나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의 주주가 주주로서 가지는 이익, 즉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서 그 집합적인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략) 영어적 표현으로 본다면 올(all) 또는 토털(total)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후단,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전체의 의미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특정 주주, 지배주주에 대응하는 의미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에브리(every)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모든’, ‘각각’ 그런 의미를 띠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제2항 후단의 중점은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전체’라는 단어가 앞의 총주주와 개념상 혹은 표현상 혼란의 우려가 있다면 저는 ‘전체’라는 단어는 삭제해 두고 의미상 해석은 된다고 보고요, 통한다고 보고. 또는 ‘각’ 또는 ‘모든’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그런 의미로 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 법무부는 이러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음. 회사와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그 직무의 내용이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음이 없으나, 회사와 주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할 때 직무의 내용이 달라지고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여 이사의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오히려 이사의 면책 논리로도 작동 가능하다고 설명함.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의무의 충돌’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 제382조의3제1항의 “주주”를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¹⁶⁾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

- 또한, 법무부는 ‘주주 이익 공평 보호’ 규정(안 제382조의3제2항)은 개별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 의무, 차별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총주주”, “전체 주주”는 의미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상법상 개별 주주를 의미하는 “주주”로 표현을 통일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

□ 다음으로, 법원행정처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지는 국회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안 제382조의3제1항)은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가 위임임을 전제로 하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 점, 이사의 형사책임(배임죄 등) 문제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정 조항의 의미,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 및 주

16) 법무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일치한다고 해석되고, 다음과 같은 판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등)도 주주 전체의 단체적 이익을 지칭할 때는 ‘전체 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 표현을 사용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주주 간)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 (중략) ...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주가 갖는 구체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법문언을 명확히 하여 배임죄의 범위나 충실의무의 상대방 등 적용상의 논란을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상의 법무부·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참고 자료 p.22)

구분	충실의무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현행	회사	-
개정안	회사 및 주주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법무부 수정의견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	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법원행정처 수정의견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	주주 이익 공평 보호 및 특정주주 이익 우선 금지

(4) 참고사항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208496호)이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2025. 2. 24.),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6.)에서 각각 의결·제안되었고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5. 3. 13.)에서 원안의결되어 정부로 이송(2025. 3. 21.)되었으나,
2025. 4. 1. 해당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
되었고, 제424회제5차 국회본회의(2025. 4. 17.)에서 위 안건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再議)의 건”은 부결된바 있음.

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임(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

현행	개정안
	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u>

현행	개정안
	<u>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 <u>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u> <u>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이와 같은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¹⁷⁾ 이사회 의결의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¹⁸⁾ 개최할 수 있고, 자산 규모

17)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설정방식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①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Opt-in 방식과 ②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Opt-out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pt-out 방식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정부제출안(의안번호 제2201063호, 2024. 6. 27. 제출)은 Opt-in 방식을 취하고 있음.

18)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은 ① 물리적 공간에서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와 ② 현장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만을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에서 제364조에 따라 현장주주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제542조의16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함(안 제542조의14·제364조).

-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의사진행·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의 효율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보존하고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2조의15).

나. 검토의견

(1) 구체적 검토

- 개정안은 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범위 및 운영방식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¹⁹⁾ 현장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며,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²⁰⁾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한편, 정부제출안(의안번호 제2201063호, 2024. 6. 27. 제출)은 현장병행형과 더불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도 허용하고 있음.

19)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범위 및 운영방식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여 주주들이 원격으로 참관할 수 있게 하는 기업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780개사 중 정기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한 회사는 2022년 25개, 2023년 29개에서 2024년 17개로 감소)였음.

20)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3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가 동시에 여러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렵고, 2017년 12월 이후 새도우 보팅 제도(소액주주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불성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것으로 의제하던 제도임)가 폐지된 이후로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 또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임.

- 다만, 개정사항 중 기업 의사결정의 자율성 도모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뿐만 아니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도 선택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²¹⁾,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주주의 소외 가능성과 전자주주총회 운영주체가 경영진에 반대하는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발언기회를 제한하는 등 주주권이 침해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법제적 측면에서는,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로 정의(안 제542조의14제1항)하고 있는데, 안 제542조의14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및 “전자통신수단”이라는 법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어 정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전자통신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²²⁾

21) 상장회사협의회는 감염병 사태 등 물리적으로 현장 주주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고,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만을 허용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2)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는 회의체로서 “쌍방향 통신”이 핵심요소이므로 “전자적 방법”이 아니라 “전자통신수단”으로 안 제542조의14제1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 관계기관 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법무부는 안 제542조의14제1항의 “전자주주총회” 정의 관련 규정에서 “일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결의” 대신 “총회에 출석”이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방안을²³⁾ 제시하고 있으며, 대리인의 온라인 출석도 허용하는 취지로 대리권 증명 방법으로 “전자문서”도 추가하여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자주주총회의 취지에 맞게 소집통지의 전자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²⁴⁾

□ 다음으로, 법원행정처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제고하고 주주가 용이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고 있음.

○ 다만,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의 제정 및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실시를 준비하기 위

23) 법무부는 이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먼저,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주주 선택에 따라 주주 전원이 온라인 출석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라는 단정적 문구는 삭제가 필요하고, 전자주주총회는 전자투표와 달리 “결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출석”하는 것이므로 표현 수정이 요구되며, 전자주주총회는 회의체로서 “쌍방향 통신”이 핵심요소이므로 “전자적 방법”이 아니라 “전자통신수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24) 또한,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 인프라 구축, 안정성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1년 6개월”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 시스템 구축, 시범실시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한편,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208496호)이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2025. 2. 24.),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6.)에서 각각 의결·제안되었고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2025. 3. 13.)에서 원안의결되어 정부로 이송(2025. 3. 21.)되었으나, 2025. 4. 1. 해당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었고, 제424회제5차 국회본회의(2025. 4. 17.)에서 위 안건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再議)의 건”은 부결된바 있음.

3.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해임 규정 정비(안 제542조의12제7항 삭제)

-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3% 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2제7항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⑥ (생략)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u>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⑥(현행과 같음) ⑦ ----- ----- ----. <후단 삭제>

- 위 개정안은, 제542조의12제4항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방식을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관련 개정안이²⁵⁾ 심사·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을

25) 오기형·차규근의원안(의안번호 제2202706호, 2024. 8. 9. 발의), 김남근의원안(의안번호 제2204475호, 2024. 9. 30. 발의),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제2210044호, 2025. 4. 22. 발의)가 있음.

현행	의안번호 제2202706호 개정안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

제고하려는 법령정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제542조의12 제4항은,²⁶⁾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

현행	의안번호 제2202706호 개정안
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u>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u> 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 ----- ----- ----- <u>-----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u> ----- ----- ----- -----.

26) 「**상법**」 제542조의12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일반 3%룰”).

- 다음으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초과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해당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3%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평가(“최대주주 합산 3%룰”)하게 됨.

- 한편, 상장회사의 감사를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1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이 준용되는데, 감사 선임·해임에 있어서는 항상 위 “최대주주 합산 3%룰”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7항 후단을 두고 있었음. 따라서, 관련 개정안들과 같이 같은 조 제4항을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최대주주 합산 3%룰”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후단 조항은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

문 의 처
02)6788-5055

<참고자료>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관계기관 수정의견

1. 법무부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²⁷⁾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²⁷⁾
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관련 개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0020호, 2025. 4. 22. 발의)의 내용과 동일함